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7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사전 통지 기한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의를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플랫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에 플랫폼 운영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마.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인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5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 관련 자료요청 시

협조의무가 있는 기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우”를 “경우 조사 시작 7일 전까지”로, “미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생성·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자료
2. 부동산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수신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 ④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u>경우</u>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u>미리</u> 알려야 한다.	⑤ ----- ----- ----- <u>경우 조사 시작 7일 전까지</u> ----- ----- ---- <u>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u> -----.
<u><신 설></u>	<u>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u> <u>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u> <u>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u> <u>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u> <u>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u>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생성·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자료

2. 부동산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수신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

	<u>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u>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3.·4.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u>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273